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4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이개호·박해철·김현정

이정문 • 위성곤 • 서영교

부승찬 · 정진욱 · 조인철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.

그러나 고령자, 어린이, 장애인, 영유아 동반자, 임산부 등 인구의 40%에 달하는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,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.

"2021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'에 따르면 횡단보도 턱 낮춤 미설치, 점자블록 설치 및 기울기 부적합, 우수받이 덮개간격 부적합, 휠체어 이용자의 도로 주행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.

이에 교통수단, 여객시설,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적합성확인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여

교통약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.

법률 제 호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"을 "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"으로 하고, "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"를 "교통수단, 이객시설 및 도로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의견을 들을 수 있다"를 "의견을 들어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"를 "교통수단, 여객시설 및 도로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기준적합성 심사) ① 교통	제12조(기준적합성 심사) ①		
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	<u>교통수단,</u> 여객시설		
<u>시설에 대한</u> 면허·허가·인가	<u>및 도로에 대한</u>		
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	<u>교통수</u>		
<u>객시설에</u> 설치된 이동편의시설	<u>단, 여객시설 및 도로에</u>		
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			
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.			
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	②		
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			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		
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법인			
또는 단체의 의견을 <u>들을 수</u>	들어야 한		
있다.	<u>다.</u>		
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	③		
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	<u>교통수단, 여객시</u>		
<u>시설에</u> 설치된 이동편의 시설	<u>설 및 도로에</u>		
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			
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			
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			
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	.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